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2025. 9. 23.(화)



행정복지위원회

# 목 차

|   |    |
|---|----|
|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
|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  |
|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5  |
|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
|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
|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
| 7.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 14 |
|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6 |
| 9.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9 |
|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25 |
|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91호
- 제출일: 2025년 8월 29일
- 제출자: 전홍배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발생 시,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보상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직무 범위 확대(회기중 또는 공무여행→상시)(안 제2조제1호)
- 직무 인정 범위·장애 및 상해 기준 정비(안 제3조~제5조)
-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장애·상해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 현행 다소 추상적이었던 보상 사유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장애 및 상해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직무의 범위를 현행 ‘회기 중 또는 공무여행’ 에서 ‘의원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직무 전반’ 으로 확대하였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사망, 장애, 상해로 구체화한 점은 실효성을 높혔다 볼 수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점, 의원들의 안정적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개선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92호
- 제 출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우선구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상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을 위해 제7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경우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시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구매 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 및 부서별 구매 제품, 용역 등을 발굴·연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시설과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상위법령 및 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93호
- 제 출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상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보험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 8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발달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크게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등록 현황’ 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발달장애인은 28만 1천여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수(263백만명)의 11%입니다.

□ 전국 장애인(유형 장애정도) 현황

출처:보건복지부

| 장애유형<br>합계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 정신      |
|------------|-----------|---------|---------|--------|---------|-----------|--------|---------|
| 2,631,356  | 1,132,644 | 246,182 | 442,034 | 22,389 | 233,322 | 234,703   | 47,350 | 103,215 |
|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br>요루 | 뇌전증    | 단위:명    |
|            | 111,084   | 4,781   | 10,512  | 16,098 | 2,756   | 17,397    | 6,889  |         |

- 현재 달성군은 2025년 8월 기준 발달장애인은 총 1,505명으로 지적 장애인 1,264명, 자폐성 장애인 241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수(13,400명)의 약 12%로 조사되었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특성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2020년 발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은 인지적, 행동적 장애로 인한 특정한 지적, 운동적, 사회적 기능을 획득하거나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자기가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소통하기 어렵다는 진단적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집중의 어려움, 성행동 문제, 낮은 학습 동기,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전적 행동이란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혹은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고 가족의 권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해·공격 등의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지원은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행동치료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전적 행동에 따른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 상위법령의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본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도전적행동에 대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증진을 기대하는 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94호
- 제출일: 2025년 8월 29일
- 제출자: 서도원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3조의 2)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비용추계서 : 붙임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읍·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과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군수(읍·면)의 요청으로 소집된 회의 참석 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항목에 회의 참석 시 수당지급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그 이상으로 공적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군 행정과 읍·면 행정에 헌신적인 도움을 주는 지도자들을 위한 지원안으로서 읍·면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관내에는 새마을조직 외에도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집행기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새마을지도자들은 그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온 점을 들어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95호
- 제출일: 2025년 8월 29일
- 제출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어르신우대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변동된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사업의 신청 주체를 변경함

## 3. 주요내용

-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른 표현 정비
- 지원대상 삭제(안 제7조)
- 사업의 신청, 선정, 취소의 주체 변경(안 제15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비대상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우대업소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의 신청과 선정·취소의 주체를 군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최근 제7조 지원대상에서 목욕업소는 등록 및 이용이 저조한 바, 삭제하여 실질적 수요가 높은 업소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의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사업의 신청·선정·취소 권한을 기존의 ‘읍·면장’에서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 및 관리 권한을 군단위에서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어르신우대와 관련한 우대업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및 행정 효율적 측면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책임소재를 군수로 하여 명확하게 한 점 등을 볼 때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96호
- 제 출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영유아들이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해 쉽게 노출되면서 해당 서비스에 과몰입·과의존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영유아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달성군의 영유아·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놀이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제1항제3호)
- 놀이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제1항제4호)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 현행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보호자는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에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확한 적용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 그 보호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모호성을 줄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 현행 제7조의 영유아에 대한 발달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안내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사업을 보다 세분화 했다는 점, 또한 변화해가는 세대를 반영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놀이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시의적 조치로, 건강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영유아발달 지원과 관련하여 적용범위와 지원 사업의 명확화 및 지원대상의 다양화를 하고자 한 점 등을 볼 때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04호
- 제출일: 2025년 8월 29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추가(변경) 출연금액 : 261백만 원
  - 2025년 군 금고 협력사업비
    - 농협 250백만 원, 대구은행 11백만 원 ⇒ (재)달성교육재단 기본 재산 적립
- ☞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달성군 교육경쟁력 강화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계획은 군민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통한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와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이번 변경계획안은 농협(250백만원), 대구은행(11백만원)으로부터 확보한 금고 협력사업비 총 261백만원을 기본재산에 추가 출연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5년 출연액 4,022백만원에서 4,283백만원으로 증액 반영하게 됩니다.
- 아울러, 군 금고 협력사업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될 예정(총 1,450백만원)으로, 교육재단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기본재산을 꾸준히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재단의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따라서 본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05호
- 제 출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달성청년혁신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현황

|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설 규모           | 종사자수 | 비고              |
|---------------|--------------------------------------|-----------------|------|-----------------|
| 달성군<br>청년혁신센터 | 화원읍 성천로 5<br>(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br>별관3,4층) | 지상3,4층(645.58㎡) | 4명   | 재)대구경북<br>과학기술원 |

###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청년마당 관리 및 운영 전반
-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 청년창업가 모집 및 정착지원
  - 입주기업 육성사업
  - (예비)청년창업가 전주기 컨설팅 등

- 청년활동 및 네트워킹 지원
  - 청년 동아리, 서포터즈 운영
  - 청년 진로 공감 토크콘서트
  - 청년 활동 프로그램(원데이 클래스) 등

다. 조직 및 구성

| 구분 | 계 | 센터장 | 팀장 | 팀원 |
|----|---|-----|----|----|
| 인원 | 5 | 1   | 1  | 3  |

라.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 4.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5. 7. : 재계약 서류 접수
- 2025. 8.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 심의결과 : 평균 88점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 (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 향후일정
  - 2025. 9. : 군의회 동의
  - 2025. 10.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보 게재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6.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위탁기간(2023. 1. ~ 2025. 12.)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로 ①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② 입주기업 창업활동 지원, ③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④ 청년동아리·서포터즈 운영, ⑤ 진로·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창업지원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으로, 지난 위탁기간 동안 청년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 입주기업 육성 등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일반청년들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청년마당’을 추가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2025. 12.)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옴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88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극적으로 의결되었으며, 사업의 연속적인 측면이 효율적이므로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06호
- 제 출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 부지매입
  - 건립 중인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시 교통약자를 위한 지상주차장, 녹지공간, 주민쉼터 등 커뮤니티센터와 연계된 주민편의시설 수요가 예상되어
  - 연접 부지를 적기에 매입하여 추가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커뮤니티센터 부지의 동선을 개선하여 차량 소음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 군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 달성군 관내 인구 및 공무원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청사 주변 주차공간 확장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군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줄이고 군청사 인근 도로 통행을 원활케 하여 민원인 및 직원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달성군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
  - 교통테마공원 등 주변 시설 확장으로 충혼탑 참배객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교통약자를 비롯한 충혼탑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의 교통문화파크, 경관광장 등과의 원활한 관광 연계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및 보도교를 설치하고자 함.

### ○ 옥포읍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 매입

- 옥포읍 이팝나무 군락지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지속적인 관리·보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사유지 특성상 개인의 관리 소홀 및 산림보호구역 훼손 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팝나무 군락지를 매입하여 생물다양성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달성군의 대표적인 계절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 부지매입]

- 위 치 : 화원읍 천내리 448-3, 449-2, 449-18번지
- 기 간 : 2025. 7. ~ 12.
- 규 모 : 부지면적 680m<sup>2</sup> 연면적 979.34m<sup>2</sup>
- 총매입비 : **32억원 정도**
  - 부지매입비 2.64억, 건물매입비 28.25억, 수수료 등 1.1억

####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 × 면적) : 219,178,000원
- 건물(개별주택공시가격) : 269,000,000원
- 건물(시가표준액) : 75,695,817원
- 건물(공동주택공시가격) : 632,000,00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 7. : 사업계획 수립
  - 2025. 7. ~ 9. :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
  - 2025. 9. ~ 12. : 부지·건물 매입

## 나. [군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 위치 : 논공읍 금포리 1306-2, 1306-4, 1307-3, 1302, 1303-1번지
- 기간 : 2025. 7. ~ 2026. 12.
- 규모 : 부지면적 3,211㎡
- 주요시설 : 주차장 2개소(주차면수 80면 정도)
- 총사업비 : **43.3억원**
  - 부지매입비 27억, 공사비 16.1억, 설계비 0.2억

###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 × 면적) : 1,800,076,400원

###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 6. : 대상지 현장조사 및 부지선정
- 2025. 7. : 부지 매입계획 수립
- 2025. 8. : 지방채정투자심사
- 2025. 9. : 추가경정예산 수립
- 2025. 10. : 보상협의 및 부지매입
- 2026. 1. ~ 12. : 실시설계, 착공 및 준공

## 다. [달성군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

- 위치 : 현풍읍 성하리 464번지 및 주차장 부지 일원
- 기간 : 2024. 9. ~ 2026. 3.
- 규모 : 승강기(21인승, 장애인용/H=22m), 보도교(B=3m, L=24.6m)
- 총사업비 : **14.6억원**
  - 공사비 14.1억, 설계비 0.5억

### ※기준가격

- 건물 신축(사업비) : 1,460,000,000원

###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4. 7. : 기본 계획 수립 및 추가경정예산 확보(0.5억원)

- 2024. 10. ~ 12. : 실시설계용역 및 본예산 확보(9억원)  
  - ※ 대구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신기술활용 심의로 설계용역 중지
- 2025. 1. ~ 3. : 대구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신기술활용 심의
- 2025. 5. ~ 8. : 실시설계 용역
- 2025. 9. :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25. 10. : 착공
- 2026. 3. : 준공

#### 라. [옥포읍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 매입]

- 위 치 : 옥포읍 교항리 968, 957, 958번지
- 기 간 : 2025. 7. ~ 2026. 4.
- 규 모 : 부지면적 15,510㎡
- 총사업비 : **30억원**
  - 부지매입비 25억, 공사비 5억

####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 × 면적) : 293,219,60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 6. : 이팝나무 군락지 명소화 방침 결정
  - 2025. 7. ~ 9. : 2차 추경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 2025. 9. ~ 12. : 부지 매입
  - 2026. 1. ~ 2. : 실시설계 용역 및 행위허가
  - 2026. 3. ~ 4. : 착공 및 준공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5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의 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 부지 매입 : 화원읍 천내리 일원 토지 3필지 및 건물 2동(부지 680㎡, 연면적 979.34㎡)을 총 32억 원 규모로 매입하여, 현재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된 주민편의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군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 논공읍 금포리 5필지(3,211㎡)를 매입하여 약 8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3억 3천만 원입니다. 군청 방문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달성군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 : 현풍읍 성하리에 연면적 100.5㎡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21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보도교(길이 24.6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6천만 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과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효과가 예상됩니다.
  - 옥포읍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 매입 :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이팝나무 군락지(총 15,510㎡)를 사유지에서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군락지 보호 및 산책로·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 대표 관광 명소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 5건의 신규 취득(토지 매입 3건, 건물 매입 1건, 신축 건물 1건 포함)으로 약 3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검토결과, 각 사업별로 공공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주민 편의의 증진, 행정수요 대응, 관광자원 활용, 교통약자 배려 등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07호
- 제출일: 2025년 8월 29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일자리 수요 증가와 다양한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수행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달성시니어클럽을 전문성 및 전담인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을 추진코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달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전반

나. 위탁필요성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
-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및 취업 연계 등 특수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해당분야 전문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달성시니어클럽 운영 전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관련법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현위탁시설

| 현운영<br>법인      | 소재지               | 시설장 | 시설규모    | 근무인원 | 사용<br>형태 |
|----------------|-------------------|-----|---------|------|----------|
| 재단법인<br>달성복지재단 | 화원읍 비슬로512길 66,2층 | 김지웅 | 401.43㎡ | 38명  | 무상<br>임대 |

마. 위탁예산(2025년 기준)

(단위: 천원)

| 계       | 운영비 지원  |         |                             |
|---------|---------|---------|-----------------------------|
|         | 시비      | 군비      | 비고                          |
| 891,343 | 397,846 | 493,497 | 군비 : 일자리지원팀 인건비<br>및 사업비 포함 |

바. 위탁 기간 : 5년(2026. 1. 1. ~2030. 12. 31.)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아. 민간위탁 추진일정



##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기준                   | 검토결과  |
|------------------------|---|
|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및 노인일자리 사업량과 수행인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영 방식보다,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및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공급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합함                                      |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수탁자 책임성 확보, 지속적인 지도·감독 강화 및 처리 상황점검 등을 통한 공공성 및 안정성 유지가 가능함          |
| 3. 경제적 효율성             | 위탁 시 민간자원 활용(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및 위탁기관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높음  |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 사회복지 관련 자격 및 경험이 있고,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위탁 시 해당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및 매년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수행기관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해당 사무의 성과 측정 가능  |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행정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호협력 및 지도·감독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 최종 검토결과                |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법인전입금·후원금 등 보조금 외 수입 확보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달성시니어클럽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함 |

## 차. 향후일정

- 위탁운영 법인(단체)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2025. 10월 중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 2025. 11월 중
- 위·수탁 계약체결 : 2025. 11월 중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달성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달성시니어클럽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회 동의)에 따라 상정된 사항입니다.
- 달성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법」 제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상담·연계·교육훈련 등을 통해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고용지원이 아니라 공동체사업단 운영, 맞춤형 직종 개발, 지속적 상담·교육 등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민간위탁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제4조 제3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그간 달성군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수탁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법인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산 측면에서는 2025년도 운영예산 약 892백만 원(시비 398백만 원, 군비 494백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안정적인 시비 확보와 더불어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08호
- 제 출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여성가족부 「2021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21. 10. 13. 시행)에 의거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명칭을 일치시키고,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현 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센터 설치·운영 조례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제1항)
- 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0조제3항)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비용추계서 : 비대상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던 사항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여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3조(설치)에 설치 근거에 ‘공공시설 내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가함으로써, 향후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지속적인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